

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!

단가 인상 및 품목 확대



지급대상

농지(논)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)에서 해당 기간(전년 11월 ~ 당해 연도 10월까지)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

농림축산식품부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지자체

01 지급대상 농지



☑ 농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

☑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
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
이용되는 논(畓)

-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
*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
-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제12조제1호에
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

- 하계조사료의 경우 ①'23년에 정상적으로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
받은 농지, ②'18~'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, ③'21~'23년 기간 중
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, ④'23년도
벼를 재배한 농지 등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02 지급대상 농업인



☑ (농업경영체 등록)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☑ (1천㎡ 이상 경작) 폐경, 휴경, 고정시설면적을 제외하고, 지급대상
농지(논)에서 1천㎡ 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

*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
*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고

03 대상 품목



동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·사료작물

(식량작물) 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감자 등
(사료작물)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에 따른 목초, 풋배기 사료작물

하계 10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두류, 가루쌀, 옥수수, 조사료

(식량작물) 콩·팥·녹두·완두·강낭콩·동부·잠두·칼콩·제비콩·병아리콩·
렌틸콩 등 두류, 옥수수, 가루쌀*

*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(채종단지, 시범단지 등 포함)에
포함된 농지에 한함

(사료작물)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1]의 곡물, 목초 및 풋배기 사료작물
* 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

대상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

* 인센티브 대상: 동계 밀·조사료 - 하계 두류·가루쌀

04 직불금 지급 기준



☑ 지급 금액: 지급단가(원/㎡) × 대상품목 재배 면적(㎡)

*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

☑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업인: 30ha / 농업법인: 50ha /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: 400ha

*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

05 지급 단계



〈 전략작물직불제 재배유형별 지급단가 〉

구분	품목	단가(ha당)
단 작	밀	50만원
	청에보리,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	*
	보리,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	*
	두류	200만원
	가루쌀	*
	식용 옥수수	100만원
이모작	하계조사료	430만원
	이모작 동계+하계 (동계) 밀·조사료 + (하계) 두류·가루쌀	100만원 추가지급

0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벌칙



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자
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3조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직불금 지급을 제외(환수) 및 3년 간 등록 제한
- 부정수급자 정보 공개

☑ 주요 사례

- 직불금 대상 품목을 재배하지 않으나,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- 지급대상 농지가 아님(폐경, 휴경 등)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-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행위

07 준수사항 이행점검



- 점검기간: (동계) 4~5월 / (하계) 8~10월
- 점검대상: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농지
- 점검내용: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, 대상품목 재배 면적 등 현장조사
- 점검기관: 농지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

08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사업 주요 일정



- 직불금 신청기간: (동계) 2.1. ~ 3.31. / (하계) 2.1. ~ 5.31.
- 직불금 등록증 발부: 4~6월
- 동계작물 이행점검: 4~5월
- 하계작물 이행점검: 8~10월
- 등록자 확정: (동계) 7월 / (하계) 11월
- 직불금 지급: (동계) 8월~9월중 / (하계) 12월중

09 문의처



- 직불금 신청·접수·지급: **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**
(수원시는 구청 경제교통과)
- 준수사항 이행점검: **농지소재지 농관원**
- 공익직불제 및 AgriX 콜센터: **1334**

10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주요 Q&A



- Q** 전략작물을 논이 아닌 밭에서 재배·수확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인지?
- A**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·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밭에서 이모작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- Q**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을 일정기간(동계)만 임차하여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대상인지?
- A** 하계작물을 재배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계 식량·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한시적(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)으로 임차(사용차)하여 경작하는 경우 지원 가능
다만, 농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농지를 재임차(전대)한 경우는 지급 불가능
- Q** 녹비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?
- A**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·사료작물 재배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녹비용으로 재배한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* 녹비용: 거름(퇴비)으로 사용하는 것
(예시) 수확하지 않고 해당 농지에 그대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